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1. 의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 2. 보호법익
- 1) 명예의 의의
 - ① 명예의 내용
 - * 내적 명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 그 자체 → 보호할 수 없다.
 - * 외적 명예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 사회적 평가 → 명예회손죄의 보호법익
 - * 명예감정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의미 →보호할 수 없다
- ②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
 - * 외적 명예 명예훼손죄, 모욕죄
 - * 외적 명예가 타당(多, 判) 윤리적, 사회적,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다.

1. 명예훼손죄

 $(신분범 \times, 목적범 \times, 반의사불벌죄, 미수범처벌 \times, 과실범처벌 \times)$

§ 307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12

②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① 객체: 사람의 명예
- 명예 : <u>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일반의 평가(외부적 명예)</u>
 - ※ 사람의 경제적 지급능력,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명예의 일종이지만, 별도로 신용훼손죄의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본죄의 명예에서는 제외

- 명예의 주체

- . 자연인 : 유아, 정신병자, 사자 포함
- . 법인: 0
- . 법인격 없는 단체 0
- . 집합명칭에 의한 훼손:X

단, 특정가능하다면 0

② 행위

- 1) 공연성 :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통설, 판례)
- 전파성이론: 학설부정, 판례인정

判)

- . 개별적으로 <u>한 사람</u>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 충족
- . 1인에 대한 편지 발송도 수신인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인정
- . but 피해자와 그 남편 앞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 피해자의 친척 1인에게 불륜관계를 말한 경우,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이사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 -전파가능성 X 공연성 부정

2) 사실의 적시: "구체적 사실의 적시"

- 사실: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
- 사실의 적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
- 사회적 가치에는 인격, 기술, 지능, 학력, 건강, 신분 등을 포함0
- . 적시의 구체성
- . 피해자의 특정(이름까지 밝힐 것은 불요)
- 기수시기 :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을 때 기수** → 미수범 처벌×(추상적 위험범)
- 3)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 허위사실을 진실로 착오하고 적시 → 307①
- 진실을 허위로 착오 → 307①

③ 위법성

- 피해자의 승낙 : 위법성 조각
- 법령에 의한 행위: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기소유지 진술, 증인의 증언, 변호사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내용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 but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권리의 남용으로서 본죄가 성립(통설)
- 업무로 인한 행위
 - ※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X
- ④ 소추조건 : 반의사불벌죄

[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모욕죄에는 적용되지 x) /요건/

- 1.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 2.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효과/
- 1. 실체법적 효과-처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 조각(통설)
- 2. 소송법적 효과- 거증책임 전환(통,판)
- 3. 반의사불벌죄

[判]

- **1.** 공연성 인정
 - 1) 동네 사람 1인과 시어머니 앞에서 "딴 남자와 여관에서자고 아침에 온다."
 - 2) 같은 교회 사람에게 "피해자가 처자식 있는 남자와 산다."
 - 3) 경찰에게 고문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4인 이상에게 유포
 - 2. 공연성 부정
 - 1) 험담에 대한 힐책
 - 2) 남편의 불륜사실을 듣고 당사자에게 힐책.
 - 3. 사실의 적시
 - 1) "애꾸눈 병신" 모욕죄
 - 2)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모욕적인 언사 →구체성이 있어야 명예훼손
 - 4. 공익성(310)

사전신상조사가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0

2.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

§ 308 공연히 <mark>허위</mark>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12 ①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확정적 고의임을 요한다.
- * <mark>친고죄</mark>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 <형소 **§ 227**>
- * 소멸된 법인은 객체 X
- cf) 죽은 자인줄 오신하고 산 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성립 산 자로 오해하고 사자에 대한 진실한 사실 적시 - 무죄
- 判) 빚 때문에 죽은 척하며 도망 다니는 나쁜놈 사자명예훼손

3.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목적범, 반의사불벌죄, 공연성을 별도 요건으로 하지 않음,위험성 증대)

§ 309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①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307조②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비방의 목적없이 허위사실을 신문에 게재한 경우-불성립
- -비방할 목적은 있어도 출판물등이라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명예훼손-불성립

/ 비교 /

307조 명예훼손죄	309조 명예훼손죄
비방할 목적 X	비방할 목적 0
공연성 0	공연성X, 출판물 등에 의한 방 법

- 1.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 공연성은 요건 아님, 출판물 등은 공연성보다 전파가능성 높기 때문
- '기타출판물'은 적어도 인쇄할 물건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프린트하거나 손으로 쓴 것은 해당X
- 2.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 고의+ 비방의 목적
- 타인의 비리 또는 범죄사실을 신문지상에 게재한 경우 비방목적 O- 본죄 성립 비방목적 X -3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조각, 범죄불성립 310조에 해당 않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착오]

- 1. 갑은 항간에 떠도는 톱스타 A양이 미혼모라는 찌라시 진실이라고 생각하고는 이를 모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으나 이는 진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 2. 갑은 톱스타 B양을 음해하기 위해 B양이 유부남과 간통한다는 허위사실을 인터 넷에 유포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진실 임이 밝혀졌다

1.

-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
- 15조 1항 적용- <u>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u> 성립

2.

- 진실한 사실을 허위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
- 307조 2의고의로 307조 1의 결과 발생
- 큰고의(허위)는 작은고의(진실)을 포함하므로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 성립

[307조 1항이 적용되는 사실관계의 유형]

- 1.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 2.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
- 3. 진실한 사실을 허위의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
- 4. 비방의 목적은 있으나 출판물을 이용하지 않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 5. 비방의 목적 없이 출판물을 이용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 6.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310조와 309조1항의 관계]

피고인 갑이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경쟁 후 보자였던 피해자 을과 당선 경쟁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조합원들에게 배포 한 이 사건 인쇄물에서 적시한 사실은 '이 사건 조합의 전 이사장이 대의원총회에 서 불신임당하고 업무상의 비리로 인하여 구속된 사실', '피해자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해자가 전 이사장과 같은 친목회에 소속하여 있는 등 친밀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합동유세를 공개 제의하였는데 피해 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반박한 사실 ' 등 그 중요한 부분 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다만 그 문맥 중에 '탄생시킨 주역', '추종','저의','조 합원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 ' 등의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방법이 사용되 었다

[판결요지]

형법 제 309조 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 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 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의 공공의 이 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 309조 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307조 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307조 1항 소정 의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310조의 위법성 조각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4. 모욕죄

- § 311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객체:사람(사자 불포함)
- ② 행위 : **공연히 모욕**하는 것
- 모욕: 구체적 사실적시× → 단순히 사람을 경멸할 만한 추상적 사실 내지 가치판단
 ex) 나쁜 놈, 죽일 년
 - 判) 1. "사이비기자", 뚱뚱해서(경멸적언행의 일부 이룸) → 성립 빨갱이, 무당, 첩년 등 동네사람 앞에서 "저 망할 년 오네" → 성립
 - 2. "너이 쌍년왔구나" → 파탄된 혼인 수습중 격한 감정 가족끼리 말할 때 → 공연성이 없다
- 표시방법: 제한 없다
- . 언어, 서명, 거동(침뱉는 행위), 부작위를 불문한다.
- . 표현범이므로 단순한 무례, 불친절은 모욕에서 제외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별

구 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보호법익	외부적 명예	외부적명예(통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
행위방법		하지 않고 경멸의 의
8131 	구체적 사실의 적시	사를 표시(추상적 사
		실의 적시)
행위상황	공연성	공연성
	자연인(유아, 정신병자	자연인(유아, 정신병자
명예의 주체	포함)	포함)
(행위의	법인	법인
객체)	☆ 사자 → 사자명예	☆ 사자 → 모욕죄의
	훼손죄	객체가 아니다
형법	적용된다	적용 안된다.(통설, 판
제310조의	(제 ₃₀₇ 조 ①항에 한	
적용여부	함)	례)
	반의사 불벌죄	
소추방법	☆ 사자명예훼손죄 →	친고죄
	친고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적용
-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2001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7년 이하의 징역)에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한다.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 ' :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한다.

Episode 4. 사이뻐 등에웨손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I.총설

- 1. 의의 신용훼손, 업무방해, 경매. 입찰의 공정성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 2. 본질 자유에 대한 죄의 성격, 재산죄의 성질도 지니는 범죄.

Ⅱ. 신용훼손죄

§ 313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의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신용을 훼손함으로 성립하는 범죄.
- * 신용 사람의 <u>경제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u>, 즉 사람의 <u>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u>에 대한 사회적 신뢰.

- 2. 행위
- 1)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신용을 훼손하는 것.
- 2) 방법 허위유포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다수인에게 전파
 - 위계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
- */ 타죄와의 관계/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 ; 양죄 상상적경합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만 성립
- 업무방해죄와의 관계; 1개의 행위로 신용훼손과 업무방해시 양죄 상상적경합
- 判) 점포에 물건 값이 유난히 비싸다 → 성립 안됨

3. 업무방해죄(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추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1. 의의
- 1) 재산죄가 아니라 재산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인격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 즉, 사람의 활동의 자유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호하는 범죄

- 2)보호법익 업무
- ① 업무 사람이 그 <u>사회적 지위</u>에 있어서 <u>계속적으로 종사</u>하는 사무 또는 사업.
 - . ex 시험문제 누설하여 출제관리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본죄에 해당.
- ②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 과실범에 있어서의 업무와 다름.
- ③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업무/본죄는 이러한 제한 필요X, 본죄의 업무는 <u>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u>에 제한

cf>공무의 경우- 소극설 判 - 업무) 공장이전 등 일시적인 것은 아님. 종중의 의사 진행의무 1회이지만, 종중의 사회지위 계속으로 인정. 대모 중(백화점) 불날 위험으로 단전 - 성립 안됨 강제경작 방해- 정당수행이 아니 여서 - 성립 안됨 무면허 운전, 불법의료행위-본죄의 업무X 2. 행위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

ex>

- 대학교수의 시험 문제 누설(고의로)
- 위계(컨닝) 돈 받고 들여 보내주는 총장, 이력서 허위작성, 타인이 써준 논문
- 타인명의의 허위학력과 경력등을 제출하여 위장취업하는경우
- 동종 또는 유사한 상호, 상표를 사용하여 고객을 빼앗는 경우
- 음식점, 다방 등 타인 매장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난동 부린 경우
- 회사경비원들의 출입통제 업무를 완력으로 방해한 경우 등

3. 위법성

- 정당행위: 노동쟁의 행위
- 노동쟁의 행위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방법이 위법한 경우 ; 업무방해죄 성립
- 근로조건 개선이나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인 경우 ;위법성 조각
-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 경우
 - ; 업무방해죄

[컴퓨터 관련 업무방해죄(신설)]

-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객체로 추가
- 1. 행위
 - (1) 손괴
 - (2)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 (3) 기타 방법에 의한 장애의 발생
 - (4) 정보처리장치의 장애 발생

<비교>

공통: 위계	
신용훼손죄	허위사실 유표+ 위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위계+위력
경매입찰방해죄	X 위계+위력